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재 3톤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,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(현행 제3조제1호 삭제)

나.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1월1일로 설정(부칙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 : 없 음

대통령령 제 호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법 제6조제1항제 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3톤 미만의 어선. 다만, 3톤 <u>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</u> <u>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3톤</u> <u>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.</u>	<u><삭 제></u>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468